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이종성・김영식・허은아

박덕흠 · 성일종 · 임이자

김태호 • 이 용 • 정진석

정운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은 없어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 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하여야 한다"를 "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	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
대한 교육) ① 관계 중앙행정	대한 교육) ①
기관의 장은 「아동학대범죄의	
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	
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람(이하 "아동학대	
신고의무자"라 한다)의 자격	
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	
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	
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	
도록 <u>하여야 한다</u> .	<u>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</u>
	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
	<u>한다</u> 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